

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[]지정 []변경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1. 지정신청

신청인	기관·단체명	대표자명
	(설립년도) (년 월 일)	
	기관·단체 소재지(인터넷주소 포함)	(전화번호:) (인터넷 주소:)

신청내역	교육기관의 명칭	대표자명
	교육기관의 소재지	(전화번호:)
	교육기관의 개설예정일	

2. 변경신청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[] 교육기관의 명칭		
[] 교육기관의 대표자명		
[] 교육기관의 소재지		
[]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	※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가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에 기재	
[] 교육경비 산출내역서	※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나. 재정운영계획서에 기재	

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([]지정/ []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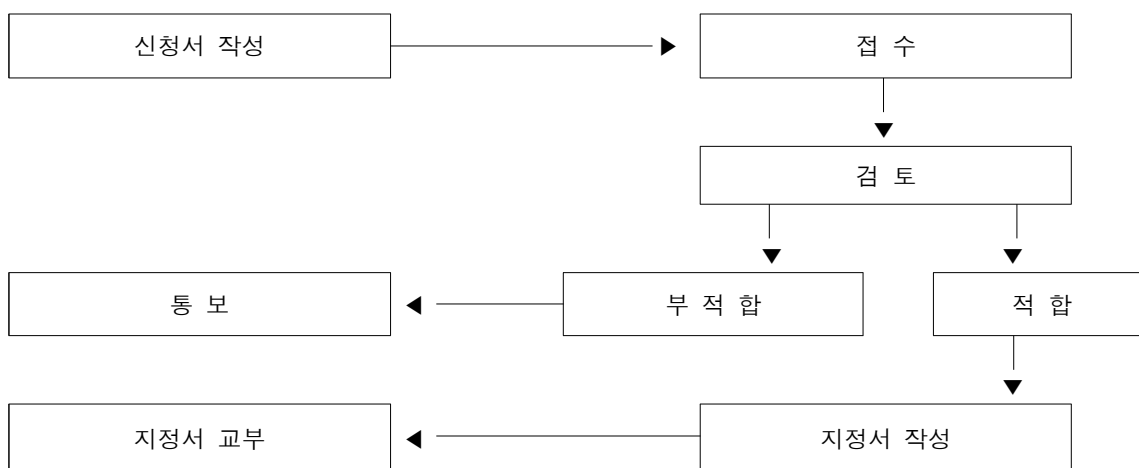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지정신청의 경우 가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나.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다.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라.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2.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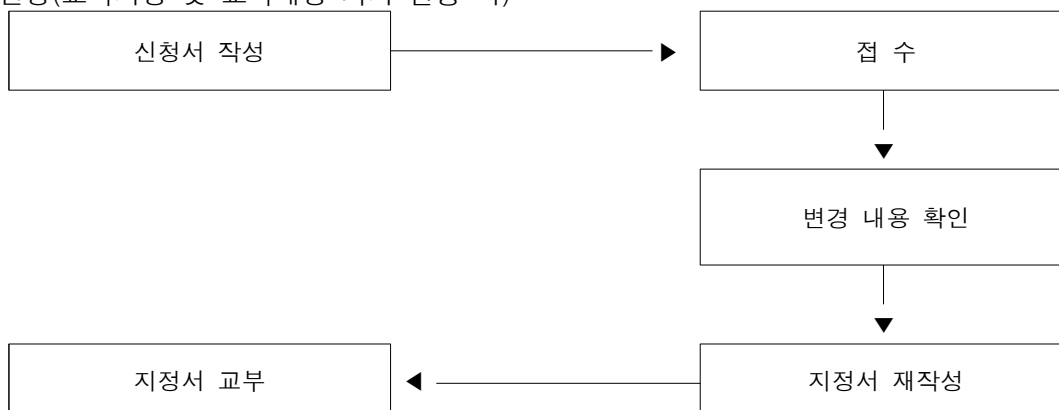
신 청 인	처 리 기 관(담당부서)
	문화체육관광부(문화예술교육과)

1.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 시)



※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신청의 경우, 적합·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별도로 지정서를 재발급하지 않습니다.

2. 변경신청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외의 변경 시)



※ 교육경비 산출내역에 관한 변경신청의 경우, 변경 내용 확인 후 별도로 지정서를 재발급하지 않습니다.